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

제409회 충청북도의회
정례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3. 6. 9.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: 이욱희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23년 5월 31일

○ 회부일자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 이유

○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 「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」에서 위임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및 방법 등이 고시된 「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」이 2020년 12월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○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학생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제3조)

○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(제5조)

○ 저소득층학생에게 개인용 컴퓨터, 고장수리비, 인터넷통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함(제6조)

○ 학생용컴퓨터 및 정보화지원컴퓨터에 대하여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, 기술적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제8조)

○ 교육정보화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정보화지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(제9조)

5. 검토 의견

가. 조례 개정이유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월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을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[1]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으로 하도록 개정한 「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」 제50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「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」에 근거하여

---

1)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(평가시험 대상 등 ① 영 제50조제1항에서 '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'이란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중에 구매 금액이 1억원(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) 이상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말한다. 다만,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」 제8조제3항의 사업의 경우에는 구매 금액이 2억원(부가기치세를 포함한다) 이상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다.

[별표3]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

중분류	소분류	소프트웨어 목록
시스템 SW	통신SW	논리적 망분리, 망간연계 SW
	유틸리티SW	화상회의, OCR
	시스템관리SW	시스템 관리(SMS), 네트워크 관리(NMS), 성능 측정 및 관리(APM), DB 성능 모니터링, 시스템 백업, 통합관리(EMS), 인공지능 플랫폼
	정보보호 SW	DB보안/접근제어, DB암호화, 시스템 접근제어, 개인정보 비식별화/지능형 비식별화 SW
	미들웨어 SW	WAS, WEB서버, 가상화, 검색엔진, 전사적애플리케이션통합(EAI)
개발용 SW	데이터 관리용 SW	DBMS, DB리포팅, 데이터품질관리/메타관리, ETCL, CDC, BI, DB재구성, 빅데이터 솔루션, OLAP, DW
응용 SW	기업관리 SW	전자문서관리(EDMS)
	GIS SW	GIS
	기타응용 SW	자연어 처리, 분배관리

○ 지금까지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정량평가를 강화하여 실시해 오던 충청북도 내 학교·기숙사 등의 학생용 컴퓨터와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의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및 방법 등과 관련된 조항들을 재정비하고,

○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사이버음란물과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·마약·게임 중독 등과 같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종합적이고 현실성 있게 개선·보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정보화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 사료됨.

○ 본 개정 조례안 관련하여 타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, 총 11개 시도 교육청에 제정되어 있으며, 이 가운데 충북과 광주, 전북을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,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학생용컴퓨터를 포함하지 않는 곳이 5곳임.

<17개 시도 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 관련 조례 현황 ´23. 5.>

순번	지역	법령명	구분	시행일자	적용범위		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
					저소득층 학생	학생용 컴퓨터	
1	**충북**	**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**	**일부 개정**	**2018.11.9.**	**포함**	**포함**	**실시**
2	경기	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	제정	2016.1.4.	포함	미포함	X
3	경남	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	제정	2016.7.1.	포함	미포함	X
4	인천	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	제정	2018.3.1.	포함	미포함	X

5	충남	충청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	전부 개정	2021.9.30.	포함	미포함	X
6	경북	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	타법 개정	2020.1.6.	포함	미포함	X
7	광주	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·해소에 관한 조례	타법 개정	2022.6.29.	포함	포함	실시
8	대전	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	제정	2016.5.1.	포함	포함	X
9	세종	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	타법 개정	2022.2.21.	포함	포함	X
10	전북	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	일부 개정	2018.11.16.	포함	포함	실시
11	제주	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	일부 개정	2020.12.31.	포함	포함	X

<정보화역기능 기술적 안전조치 사업 현황>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(예정)
사업예산	-	118,800		712,800		786,224
대상	-	정보화지원컴퓨터		정보화지원컴퓨터 학생용컴퓨터		
차단방식	-	SW차단		SW차단		-
비고	-	학생용컴퓨터는 스쿨넷서비스에 포함		2년 라이선스		-
품질성능 평가시험	-	실시		실시		-

나.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

○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,

○ 안 제5조에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적 지원, 기술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
○ 안 제6조에 저소득층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, 개인용 컴퓨터, 고장수리비, 인터넷통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○ 또한 안 제8조에는 정보화역기능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과 인터넷게임 중독·과몰입 예방, 사이버음란물·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

○ 안 제9조에는 교육정보화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보화 지원 대상자 및 정보화지원컴퓨터 현황, 소프트웨어 지원 현황, 기술적 안전조치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정보화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월 개정된 「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」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및 방법 등과 관련된 조항을 재정비하고,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등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

○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정보화 지원과 정보화 역기능 예방·관리 사업을 관련 법령과 정부정책에 맞추고,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유해차단서비스 등 보호조치 관련 사업운영 방식을 현행화하여 그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, 학생들의 정보화 활용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활용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,

○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,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,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.

○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등에 따라 학생들의 인터넷·스마트폰·게임 중독, 무분별한 유해 사이트 노출, 정보통신을 이용한 청소년 마약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, 교육정보화 지원과 정보화 역기능 예방·관리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는 전담부서의 전담 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점검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시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